

로스쿨 졸업 후 진로와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Career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 and Plan for the community

김 대 희*
Kim, Dae-Hee

목 차

- I. 서언
- II. 강원대학교 로스쿨 졸업생 취업자 현황 및 주요 MOU체결기관
- III. 지역사회를 위한 강원대학교의 역할 및 현황
- IV. 로스쿨생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취업연계
- V. 결론

국문초록

지방대학 로스쿨은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선 우수한 학생들이 지방대 로스쿨 지원을 꺼리고,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방대 로스쿨과 지역사회가 서로 노력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 2018.10.30.

심사완료일 : 2018.11.20.

게재확정일 : 2018.11.20.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단 2명 뿐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강원도 사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센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학생들도 재학 중에 리걸클리닉센터의 법률상담, 공익소송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응시자 대비 절반 정도만 합격하는 현실에서 재학 중에 시험 준비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겠지만, 과거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시절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실무수습 후 곧바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학생들 스스로 재학 중 그러한 실무경험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변호사시험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변호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변호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다.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러한 무변촌을 변호사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학 중에는 지역사회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로스쿨, 로스쿨 출신 변호사,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생활법률서비스, 공익소송, 리걸클리닉센터

1. 서론

변호사는 탈윤리적이라거나 심지어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사만큼 도덕과 윤리에 집착하는 직업도 드물다. 그 이유는 직업의 특성상 변호사에게는 ‘도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¹⁾ 이에 따라 변호사법 제1

1) 앨런더쇼비츠(심현근 역), 「미래의 법률가에게」, 미래인, 2008, p. 170.

조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 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대된 예비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윤리적 법률가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은 그동안 발표된 로스쿨 제도 권화 노력에 비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로스쿨 졸업 후 진로탐색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로 민원인 상담보다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관련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민원인들은 법무부 산하 ‘법률홈닥터’ 내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홍천군 및 영월군 등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대민원 법률 상담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법률홈닥터’가 설치된 지역은 춘천·원주·속초·삼척 등 4개 지역 뿐이며, 이들도 1인의 변호사만이 상근하고 있다. 지역 특성상 법률홈닥터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의 이직이 빈번하여 적시에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공석이 발생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된다. 법률상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과 지속적인 대민원 법률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성격의 교육기관에서 법률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강원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 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로스쿨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리걸클리닉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고, 그 설치가 강제되지 아니하였기에 대부분의 로스쿨이 체계를 갖춘 리걸클리닉의 개설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로스쿨이 이론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실무교육까지 담당하다보니 임상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임상교육을 실시할 기관으로서의 리걸클리닉의 개설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마침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의 로스쿨 평가기준에 리걸클리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모든 로스쿨이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리걸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리걸클리닉으로 하여금 임상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의 경우에 로스쿨 부속시설로 리걸클리닉센터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단편적인 기능을 하는 지역법률상담소 차원을 넘어서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자 로스쿨생을 위한 임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2011. 5. 1. 개소한 이래 지난 7년 간 600여건의 온라인 법률상담과 167여건의 무변론 법률상담 및 대면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초·중·고 및 시민을 대상으로 43건의 “찾아가는 법률강좌”를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협의회에서 추진한 “리걸클리닉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2013년부터 3년 연속 “우수”리걸클리닉 지원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특히 다른 대학의 센터와 차별화 된 점으로 지역사회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강좌”가 호평을 받았다는 점, 무료 법률상담 건수에 있어서도 로스쿨 재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3년 간 수혜를 받았던 “리걸클리닉지원사업”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전면 백지화 됨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① 무변론 법률상담 수요자에 대한 법률상담 필요성 증대, ② 찾아가는 법률강좌의 호응 감소 ③ 신규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우선 II.에서 강원대학교 로스쿨 졸업생 취업자 현황 및 주요 MOU체결기관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그동안 센터에서 실시한 기존의 무료법률상담·강좌·공익소송²⁾(이하 “생활법률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IV.는 향후 발전 과제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센터 사례 등을 고찰하여 윤리적 법조인 양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논문 작성의 기초 자료는 기존 연구 논문 및 전국 대학 로스쿨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을 참고로 한다.

2) 공익소송이란, 지역사회 법률 소외 계층을 위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하는 것으로 졸업생 변호사가 이를 수입한다. 이 때, ‘공익’이라 함은 교육기관의 특성 및 센터 설립 취지에 따라 재학생의 ‘실무교육’에 부합하는 내용이면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 5. 14. 현재 총 22건의 공익소송을 실시하였으며, 화천군·삼척시·춘천시·원주시·인제군·동해시·태백시·횡성군 등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II. 강원대학교 로스쿨 졸업생 취업자 현황 및 주요 MOU체결기관

최근 6년간 강원대학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의 꾸준한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강원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강원 권역 취업에 있어서 과년도에 비해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관·산·학 간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이하 약칭하여 ‘MOU’라 함)의 내용에 취업의지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표 1〉 최근 6년간 강원대학교 로스쿨 취업률

졸업연도	취업대상자(명)	취업자(명)	취업률(%)	비고
2012	26	25	96.15	
2013	29	26	89.70	
2014	22	20	90.91	
2015	28	27	96.43	
2016	18	18	100	
2017	28	26	92.9	

기준일 - 각 연도 학위수여일

또한, 재학생이 실시하는 실무수습과의 취업연계성 제고를 위해 실습지도교수의 대외활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MOU 체결기관은 당해 기관의 법률수요에 강원대학교 로스쿨이 대응해 줄 것 내지는 실무수습기관으로서 재학생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MOU 체결기관이 본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취지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에 있어서 실무수습생의 파견 경험은 로스쿨과 MOU 체결기관 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는 강원대학교 로스쿨의 졸업 연도별, 분야별 취업자 현황인데, 강원 지역은 그 수가 미미하여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현재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취업한 졸업생은 5명³⁾에 불과하다는 점이 매우 아

쉽다. 이를 위해서는 대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무업무를 하는 지역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표 2〉 졸업 연도별 분야별 취업자 현황

취업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법원	3	1	1	2	1	0
검찰	1	0	1	0	0	0
군법무관	0	2	0	3	1	0
공익법무관	0	1	0	0	1	1
법무법인	6	12	7	10	6	7
공동법률사무소	2	5	3	7	5	10
단독사무소	4	0	3	2	0	3
국가기관	4	1	2	1	2	2
지방자치단체	2	1	1	0	0	0
공공단체	0	1	0	1	0	0
공기업	0	1	0	0	0	0
사기업	2	0	2	0	0	3
국제기구	0	0	0	0	0	0
기타	1	1	0	1	2	0
계	25	26	20	27	18	26

아래는 강원대학교 로스쿨과 MOU를 체결한 기관들인데, MOU는 주로 실습 교육 및 학술교류와 장학금 확보를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표 3〉 강원대학교 로스쿨 교류협정체결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체결일자
1	미국 슬리퍼리락 대학	1988.11.28
2	독일 킬 대학	2002.11.28

3) 강원도청 1명, 강원도의회 1명, 법률홈닥터 속초 1명, 한국전력공사 강원지부 1명, 강원대학교 1명. 물론, 춘천, 원주 등 강원도 내 법원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활동하는 졸업생들은 상당수 있지만, 그들은 최근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개인 변호사들로서(특히 원주) 지역사회 발전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3	일본 홋카이도 대학	2003.06.13
4	춘천지방변호사회	2005.11.21
5	법무법인 한울	2005.12.02
6	한국법제연구원	2006.10.11
7	환경운동연합	2006.11.17
8	법무법인 덕수	2007.10.30
9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2007.11.15
10	일본 큐슈대학	2007.11.28
11	법무법인 서린	2007.11.13
12	신한은행	2007.11.16
13	강원지방경찰청	2007.11.20
14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2007.11.12
15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7.11.09
16	강원도	2007.11.26
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03.30
18	홍콩중문대학	2007.04.11
19	춘천지방법원	2008.09.11
20	춘천지방검찰청	2008.10.01
21	법제처	2009.07.01
22	헌법재판소	2009.12.31
23	법원행정처	2010.01.25
24	법무부	2010.03.11
25	중국 서북 정법대학	2010.03.
26	국회사무처	2010.04.09
27	김&장법률사무소	2010.04.12
28	자연환경국민신탁	2010.04.22
29	법무법인 화우	2010.05.04
30	법무법인 세종	2010.05.06
31	법무법인 바른	2010.05.10
32	춘천소년원	2010.09.14
33	법무법인 소명	2010.11.01
34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대표처	2010.11.10
35	법무법인 유미	2011.03.
36	국민권익위원회	2011.07.08
37	법무법인 대세	2011.08.08
38	해양경찰청	2011.12.22

39	미국 Pace 로스쿨	2012.02.15
40	미국 Lewis & Clark 로스쿨	2012.05.18
41	미국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	2012.09.09
4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3.05.31
43	국세청	2013.09.05
44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로스쿨	2014.07.28
45	중국 북경 이공대학 법학원	2015.01.16.
46	미국 뉴욕 Andrew Park P.C. 법률사무소	2016.08.29.
47	미국 시라큐스 대학 로스쿨	2017.03.16
48	강원도의회	2017.04.25.
49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05.18.
50	춘천시의회	2017.11.06.
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11.29.
52	중국 서북대학 법학원	2018.06.26.

MOU 체결기관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국내외 대학을 포함하여 법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⁴⁾ MOU 체결 이후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강원대 로스쿨 및 이들 협력기관(특히 강원도 내 기관)들이 1회성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류하면서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무수습이나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지역사회를 위한 강원대학교의 역할 및 현황

1. 강원도 내 생활법률서비스 주요 현황

(1) 기초지방자치단체

4) 그 중 강원도와 관련된 기관은 강원도, 강원도의회, 춘천시의회,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춘천소년원, 춘천지방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등 9개 기관이다.

도내 18개 시·군은 저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홍천군의 경우, 지역을 거점으로 한 군부대(육군 제11사단) 내 복무하고 있는 군법무관이 홍천군 지역 출신 변호사 4명과 함께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지만, 홍천군의 경우 5명의 변호사가 월 2회 이상 홍천군청에 찾아가서 법률상담 민원대기를 하게 된다.

한편, 영월군과 강릉시의 경우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담 건수가 적은 편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두 지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법률상담 프로그램의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담으로만 끝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 해야 하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1개의 사건으로 2개의 기관에서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장 유명한 생활법률서비스 기관이다.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준법 강연을 통해 법률분야의 사회복지 제도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소외계층에 생활법률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때 사회소외계층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즉,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대서 내지 소송구조를 위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일정한 ‘사유’⁵⁾에 기인하여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가 없으면 완전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개 지부(춘천시) 및 10개 지소·4개 출장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춘천 지부의 경우 2명의 변호사가 채용되어 있지만, 다른 지소 및 출장소는 변호사가 없거나 1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 채용인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대상자를 신분(자격)·소득·사건(피해유형)·제도 등으로 요건을 세분화하고 있다(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lac.or.kr/other/pop_lawInfo_min.do)

센터의 전체 상담 중 약 10%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차 상담을 요청한 경우이다. 이 중 1건은 공익소송으로 진행하였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실무교육에 유의미한 사례의 경우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형식적 ‘사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므로 지역사회 생활법률서비스의 외연적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률홈닥터

춘천·원주·속초·삼척 지역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홈닥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⁶⁾ 이는 법무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홈닥터는 소송을 할 수 없으므로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마찬가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한편, 출연기관의 예산 부담이 적은 이유로 법률홈닥터 소속 변호사의 이직이 빈번하여 법조인의 정주 여건이 빈약한 도내 법률홈닥터 근무자가 서울을 비롯한 도외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법률홈닥터에게 소송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의 특성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4) 마을변호사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마을변호사 제도는 시행 초기에 많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각 지역 리걸클리닉센터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던 터라 기대가 상당한 생활법률서비스 사업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지역거점대학의 로스쿨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생활법률서비스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법무부장관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읍·면·리에 마을변호사로 배치되어 간헐적인 법률상담만이 이루어지고 있으

6) 춘천은 강원사회복지협의회 춘천지부에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주·속초·삼척은 각 시청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며, 뚜렷한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 강원도 내에는 총 161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데, 강원지방변호사회 출신은 6명 뿐이다(2017. 5. 기준). 즉,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강원도가 아닌 지역에서 강원도 마을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마을변호사의 경우에도 소송이 필요할 때, 무료로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센터에서 마을변호사를 통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건은 2건이다.

2. 리걸클리닉센터의 생활법률서비스 주요 현황

(1) 온라인 법률상담

센터에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접수하여 완료한 건수는 아래와 같다(2018.10.15.기준).

〈표 4〉 리걸클리닉센터 온라인 법률상담 건수

지역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역별 합계
춘천	25	78	92	31	38	49	42	38	393
홍천	2	-	5	4	4	9	5	6	35
태백	-	1	-	3	4	1	2	2	13
동해	4	-	-	2	3	-	1	2	12
강릉	-	1	-	-	3	4	1	2	11
원주	-	-	1	1	2	3	3	1	11
화천	-	-	1	1	1	2	2	1	8
인제	-	-	1	-	-	4	-	2	7
삼척	-	1	-	-	2	-	2	1	6
영월	-	-	-	2	2	-	-	2	6
정선	-	-	-	1	2	-	1	1	5
횡성	1	-	-	-	1	2	0	0	4
철원	-	1	-	-	1	1	1	0	4
고성	-	-	-	2	-	1	-	0	3
양양	-	1	-	-	-	2	-	0	3
평창	-	1	-	1	-	-	1	0	3

양구	-	-	1	-	-	-	-	1	2
속초	-	-	-	-	-	-	1	1	2
연도별 합계	32	84	101	48	63	78	62	60	528

2012.3.경 도내 각 시·도 홈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 배너를 설치할 것을 공문으로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담만 접수받기로 하여 ‘교육’목적이 아닌 상담은 기록하지 않았다.⁷⁾ 온라인 법률상담은 의뢰인으로부터 적절한 서면 등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면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면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프로그램으로 ‘무변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 무변촌 법률상담

센터 개설 초기에는 온라인 법률상담의 한계가 예상되어, 대면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건이 많았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면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⁸⁾ 공여지책으로 대면 법률상담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이 ‘무변촌 법률상담’이다. 상술하였듯이 강원도에 있는 법률상담 기관,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지소 및 출장소 등이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상근하는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법률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센터 설립목적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 법조인의 윤리적 사명을 제시하고자 무변촌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으며, 2017

7) 온라인 법률상담의 접수는 담당 직원이 실시하며, 교육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 함은 ①채권의 소멸시효를 묻는 질문 ②답변서 제출 기한이 관한 질문 ③탈세에 관한 질문 등에 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상담의 경우 담당 직원의 재량으로 법률규정을 알려주는 상담을 하거나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 건수는 재학생(실무교과목 수강생)이 답변서 작성을 완료하여 실무교과목 담당교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의뢰인에게 도달을 완료한 것만을 산입하였다.

8)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자문변호사의 대면 법률상담 비용으로 1건당 30만원의 상담료를 지급하였으며, 2013년에는 20만원, 2014년에는 10만원 지급하였다. 2015년부터는 재원 부족으로 대면 법률상담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년까지의 실적은 아래와 같다. 2018년에는 예산 편성 등 관련 문제로 강원대학교와 가까운 강원도의회를 3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표 5〉 무변촌 법률상담 현황

시행일	지역(기관명)	참가자(명)		비고
		재학생	민원인	
2013. 1.	삼척시(강원대학교)	12	2	
2013. 1.	동해시(평생학습관)	12	4	동해시청 연계
2013. 6.	홍천군(남면사무소)	8	7	
2014. 2.	평창군(진부면사무소)	10	13	평창군청 연계
2014. 7.	양구군(장애인협의회)	8	120	양구군노인회 연계
2015. 1.	인제군(인제농협)	8	2	
2015. 8.	춘천시(동면사무소)	15	6	춘천시보건소 연계
2015.12.	춘천시(남산면사무소)	13	5	
2017. 1.	춘천시(춘천 까리타스)	4	8	춘천사회복지회 연계
2017. 1.	화천군(화천군청)	5	0	
10개 기관		95	167	

2012년부터 4년 간 국고보조금(로스쿨협의회)예산을 지원 받아 동 예산의 효과성 창출을 고려하여 재학생들에게 참가를 권고한 바, 자발적 의무감으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능동적으로 참여⁹⁾하는 한편, 실무‘연수’의 성격으로 체득되었던 것이 장점으로 작용되면서, 시행 초기에는 로스쿨 재학생 및 민원인에게 호응을 얻었으나, 이후 로스쿨 재학생에게 참가가 강제되지 않는 점 및 대민원 홍보 부족¹⁰⁾ 등의 사유로 점차 참가자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리걸클리닉센터의 재원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약3천만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던 부서가 2016년부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16년에는 단 한 건의 무변촌 법률상담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2017년 1월에 이르러서야 교내 추경

9) 1학년때 참여했던 학생들은 3학년이 졸업 이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스스로 참가하였다.

10) 홍보 강화를 위해 현지인과의 유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평창군의 경우 공공기관 상근근로자가 아닌 마을 이장을 찾아가서 직접 홍보하였으며,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장을 방문하여 홍보를 부탁하였다.

예산을 통해 비로소 무변론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무변론 법률상담은 상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강좌 및 공익소송까지 포함하는 생활법률서비스 지원의 실천적 프로그램이다. 22건의 공익소송 중 13건이 무변론 법률상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3) 공익소송

센터는 재학생의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공익소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2018. 9.기준)

〈표 6〉 공익소송 현황

구분	지역	사건명
2012	화천	장애등급처분취소
	삼척	시멘트공장분진피해
2013	춘천	마을회관철거소송
2014	춘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소
	원주	대여금청구사건 I
	동해	이혼등청구의소(결혼이주여성)
	인제	대여금청구사건 II
2015	화천	한정후견심판청구
	원주	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결정처분취소
	춘천	토지인도청구의소(장학리)
	영월	진폐재해위로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
	원주	폭행(아파트층간소음)
2016	춘천	학원비반납(과대광고)
	춘천	전기요금(감자원종장)
	인제	마을이장공금횡령사건
	태백	요양불승인처분취소(산재보험)
	춘천	채무부존재확인소(캠퍼스내방문판매)
2017	평창	손해배상청구의소(보일러가스누출일가족사망)
	춘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상속 관련)
	원주	보증금반환등청구의소(콘도회원권 등)
	춘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소(중고차)
	춘천	계약금 반환 등 청구(호텔 분양 계약)
원주	이혼 등 청구(미혼모)	

2018	양구	점유취득시효 및 소유권이전등기
	춘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주	제3자 이익의 소

공익소송은 학기 중 개설되는 실무교과목의 수강생들이 직접 소장 내지 답변서를 작성하고, 담당변호사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실제 사례에 있어 서면 작성을 통한 실무교육 강화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서비스 지원에 목적이 있다. 해마다 공익소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해에 5건 이상의 공익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모든 공익소송의 착수금을 0원으로 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비로소 담당변호사에게 수입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¹¹⁾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자문변호사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현재 1,500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익소송 수입료 예산(3백만원×5건)을 약간 증액하여 1인의 변호사를 비상임 자문변호사로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담당변호사 및 과년도 담당변호사 총 10인에게 문의한 바, “2,000만원 가량을 정액 지급 받는다면 센터에서 수행하는 5건의 공익소송, 무변론 법률상담 및 (필요시)대면 법률상담을 수행하는 자문료로 적정한지?”에 관한 질문에서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비상임 자문변호사의 경우 책임 및 소속감이 불투명하며,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문하는 의뢰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근 근무하는 변호사의 고용이 필요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근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상술한 공익소송 및 상담뿐만 아니라 재학생 등에게 첨삭지도를 하는 등 사실상 실무교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일본은 모든 리걸클리닉센터에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로스쿨 교수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현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기

11) 지역주민에게는 ‘무료’ 공익소송이지만, 모든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인지대를 비롯한 소정의 수입료를 산정하여 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원대의 경우 1건당 300만원의 수입료를 지출한다.

초지방자치단체 및 법률홈닥터 등에서 진행되는 법률상담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야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 상담과 소송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활법률서비스 도모를 위해서는 상근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법률강좌

센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3개기관에서 ‘찾아가는 법률강좌(부제: Teaching is Learning)’를 실시하였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이 강사 자격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로스쿨협의회로부터 ‘우수’리걸클리닉센터로 지정 받는 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프로그램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7〉 법률강좌 현황

구분	지역	주제	기관명
2012	춘천	임대차 관련 특강	춘천시여성회관
2013		고등학생 노동법 교육	전인고등학교
2014		가정을 위한 법률	가정법률상담소
		노인을 위한 법률	가정법률상담소
		학부모를 위한 법률	춘천WeStart
		중학생 모의재판	우석중학교
		초등학생 학교폭력예방	상천초등학교
		혼인과 가족생활	춘천WeStart
		노인을 위한 법률	가정법률상담소
		중학생 모의재판	동산중학교
2015	춘천	학교폭력예방	춘천기계공고
	춘천	학교폭력예방	성수여자고교
	정선		사북고등학교
	형성		둔내고등학교
	삼척		도계정보고교
	철원		철원고등학교
	화천	간동고등학교	
	인제	시민법률강좌	하남초등학교
	홍천	모의재판교육	홍천고등학교
	인제		인제교육청
원주	사이버범죄	상지여자고교	

	고성	학교폭력예방	대진고등학교
	인제		상담초등학교
	인제		기린초등학교
	양구		강원외고
	양구	모의재판교육	양구여자고교
	삼척		삼척여자고교
	인제		인제고등학교
	인제		귀둔초등학교
	고성	학교폭력예방	동광중학교
	동해		광희고등학교
	인제		원통초등학교
	인제	형사절차의 이해	신남고등학교
	인제	학교폭력예방	서화중학교
	영월		쌍룡중학교
	영월		마차고등학교
	원주	노동법교육	문막고등학교
	춘천	임대차 관련 특강	강남동사무소
		임대차 관련 특강	강남동사무소
		교직원을 위한 생활법률	계성학교
2016	춘천	모의재판교육 및 진로탐색	강원중학교
			강원중학교
			사대부고

법률강좌 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소정의 교통비만을 지급되며, 재학생은 봉사하는 실천적 법조인의 사명으로 도내 초·중·고를 비롯한 법률강좌 수요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법률강좌는 큰 관심을 받았으나, 당해연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담보상태이다.

(5) 소송 수행에 관한 문제

생활법률서비스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걸클리닉센터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프로그램 중 온라인 법률상담을 제외하면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프로그램 계획조차 불가능한 것이어서,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리걸클리닉센터의 생활법률서비스가 기존 도내 생활법률서비스와 차별화된 장점은 상담에서 소송까지 1개 기관에 일원화 되어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리걸클리닉센터에서도 특히 소송과 관련하여 예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로스쿨 실무교원은 소송대리권을 갖고 있지 않다.¹²⁾ 따라서,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근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 내지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소결 : 수요자중심형 생활법률서비스의 도입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는 개소 이래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의회와 공문화의 과정을 거쳐 2013. 12. 1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인권을 위한’ 간담회, 심포지엄, 토론회 개최 등 구체적 활동들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는 ‘사회적기업 클리닉’이란 명제하에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밀착된 법률자문활동을 벌이는 한편, ‘조세 클리닉’, ‘공정거래 클리닉’, ‘인터넷법 클리닉’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임상법학교육 및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성균관대 리걸클리닉센터는 ‘법원연계형 조정클리닉’의 운영으로 66건의 조정처리사건 중 19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리걸클리닉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소비자보호 클리닉’을 통하여 법률정보의 조사, 협상,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상술한 리걸클리닉 사례를 비추어 보아, ‘도내 관광특구 지정 조례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

12) 미국의 경우, Clinical Professor of Law라는 직함을 가지고, 리걸클리닉 전임교수를 임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소송법에서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타인 사건의 대리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리걸클리닉에 의뢰한 지역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내 초·중·고생 및 노인을 위한 법률강좌 및 상담도 신규 프로그램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중 ‘청소년 법률캠프’에 관한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표 8〉 청소년 법률캠프(안)

주제	내용	장소	비고
진로탐색(법률가)	법 관련 직업의 세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월~6월
하계 청소년법률캠프	모의재판·학생자치법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8월
생활법률 OX대회	법과 사회	강원도의회	9월~12월
동계 청소년법률캠프	헌법경연대회	강원도의회	1월·2월

청소년 법률캠프(안)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도내 중등학교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및 경연 대회에 대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로스쿨 재학생들 간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법률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Ⅳ. 로스쿨생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취업연계

예산 확보 문제를 비롯한 난제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 로스쿨은 지역우수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공헌에 가일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법학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를 선발하여 사후 실무교육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사법연수원제도와 비교하면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공자들을 법조인으로 배출¹³⁾하기 위해서는 3년 간의 교육과정은 재학생 및 교수자에게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법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조윤리 등 인성교육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봉사활동 내지 동아리활동

13) 이재협·이준웅·황현정,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 제56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83면.

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¹⁴⁾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을 반대하는 입장¹⁵⁾도 있으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실무수습만으로 실무교육의 부족함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법률봉사 프로그램과 이를 연계한 실무교과목의 개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요성이 올바르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지역 소재 로스쿨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로스쿨 졸업 후, 봉사하는 실천적 법조인의 자질함양에 부합하는 윤리적 비전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이며 각 로스쿨마다 설치되어 있는 리걸클리닉센터의 역할기여가 필수적이다. 상술한 지역사회 법률봉사는 로스쿨 졸업생 홍보와 이들의 지역사회 취업에도 긍정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강원 지역 유관기관의 취업을 준비하는 로스쿨 졸업생은 리걸클리닉센터에서의 봉사프로그램 참여 경력을 증빙하는 문서를 취업 전 구비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중인 대부분의 졸업생이 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었던 점이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로스쿨 및 리걸클리닉센터가 지역 친화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지역 유관기관과의 교류와 취업 연계에 장점으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로스쿨 재학 중 실무수습이 필수적인 교과과정에 포함되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MOU 체결기관들이 실무수습을 담당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실무수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V. 결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변호사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¹⁶⁾ 지방 로스쿨 졸업생들이 지역사

14) 손중학,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시장의 준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64면.

15)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학국법정책학회, 2005, 11면.

16) 2018. 9. 30. 현재 전국 개업변호사 20,553명 중 서울에 15,098명, 인천에 555명, 경기도에

회를 위하여 활동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를 적극 고용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2명(강원도청 1명, 강원도의회 1명)뿐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변호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를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일반 직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대외비 자료를 유출할 수 없어 소송 수행에 한계가 있고, 일반 직원은 아무래도 변호사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하여 승소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 각 대학 로스쿨에 설치된 리걸클리닉센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센터 활동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다. 예산 지원이 없는 공익소송은 물론이고 무변촌을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교수들이 소송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리걸클리닉센터에 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담과 소송의 일원화를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실무경험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들도 법률상담 등 대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이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라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가 되었을 경우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로스쿨을 졸업하고 새롭게 변호사 업계에 진출한 변호사들도 사고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굳이 경쟁이 힘든 수도권에서 변호사활동을 시작하지 말고 무변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국 모든 시·군에 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분쟁이 있게 마련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대폭증가 및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으로 과거에는 소송거리가 되지 않았던 사건들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도전

1,280명 등 서울과 수도권에 16,933명(82.4%)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reanbar.or.kr/pages/introduce/stat.asp>).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학 중에는 지역사회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졸업 후 변호사가 되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판기, “평생교육으로서 법교육”, 「법학연구」 제52집, 한국법학회, 2013.
- 남선모, “법학교육의 분석을 통한 변호사 양성 제도의 방향”, 「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송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문종욱, “현대 법학에 있어서 법의 발견과 법사회학”, 「법학연구」 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 손종학,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시장의 정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법학」 제4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이재협·이준웅·황현정,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외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 제56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최성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프로그램과 방법론-민법교육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5.
- 앨런더쇼비츠(심현근 역), 「미래의 법률가에게」, 미래인, 2008.

[Abstract]

Career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 and Plan for the community

Kim, Dae-H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The local college law school is in various difficult situations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law school. First of all, good students are reluctant to apply for a local law school, and even if they graduate from law school and become lawyers, most of them will try to enter the metropolitan area. This phenomenon may be inevitable in Korea, where all economic activities are concentrated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but there will be a way to co-exist if the local law school and the community work together. The following method can be considered for this purpose. First, local governments need to actively hire lawyers. Recently,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re increasingly employing lawyers as staff, but the situation in Gangwon province seems not to be the case yet. I think it is necessary to employ lawyers in 18 cities and counties as well as the Gangwon province office to carry out lawsuits and provide legal services to local residents. Second, we must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Law School's Legal Clinic Cent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budget and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legal counseling and public interest litigation activities at the Legal Clinic Center while attending school. As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is continuously falling, it passes half of the current applicants, so at school, students can not afford to do anything other than preparing for the exam. Unlike the past two

years of judicial training, if students pass a bar exam, they will immediately start your lawyer practice after six months of practice. Students should be aware that such practical experience will be of great help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that it is helpful to prepare the bar exam. Third, the number of lawyers has recently increased explosively, but there are still many local governments without lawyers. Lawyers from local law schools need to make these village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lawyer market. By doing so, they will be able to meet the legal demands of the community while attending school and become a lawyer after graduation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Key words : law school, lawyer from law school, community, local government, life law service, public interest litigation, legal clinic center